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41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나410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343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이종준

변론 종결 2024. 2. 6.

판결 선고 2024. 3.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343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523,7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복규

판사오연정

판사안승호